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시정기간 연장 및 법 적용 알림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5046 (2021.9.7), -1610 (2021.3.23.)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시정기간 연장 알림"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시행에 따라 '20.4.2.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나,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정기간('20.4.2.~'22.3.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정기간의 종료시점을 연장 ('22.3.31.→'22.6.30.)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세버스운송업 관리 · 감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시정기간 종료로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각 지방자치단체,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 단체는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시정기간 운영》

- ◇ (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정기간 운영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등 관련
- ◇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자
- ◇ (기간) '20.4.2. ~ '22.6.30.(3개월 연장, 총 2년3개월) * 추가연장 없음
- ◇ (방법) 관할관청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관련 법 위반 적발 또는 신고 등 민원접수 시, 운송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속히 설치하도록 지도 · 감독
 - '22.4.1.전에 이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사업자도 연장된 시정기간 내에서 시정 가능
 - 다만, 시정기회는 운영기간 내에서만 부여할 수 있으므로, '22.6.30.까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가 설치 ·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

끝.



수신자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청와대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부청사관리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인천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대전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대중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강원도지사(교통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중교통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세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무관 행정사무관 전결 2022.3.28.
한승완 박종이 버스정책과장 김경현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604 (2022. 3. 2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9 팩스번호 044-201-5522 / cham11@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